

의안번호	2219224
의 퇴 인	노종면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계번호	26D2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현행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서 반환공여구역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 국유지로 확대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2. 상세 사유

□ 종합계획 수립 관련(안 제7조)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현행법은 수립 주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법에 따라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계획기간은 2008년에서 2026년까지임

□ 발전종합계획 개요

- 목적: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간: 2008년~2026년(19년간)
※계획기간 2회 연장: '17년 10월 5년 연장, '21년 12월 4년 연장
 - 대상: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
 - 규모: 570건, 49조 1,956억원(국비 4조 9,298억원, 지방비 6조 7,521억원, 민자 37조 5,137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현행법 제8조¹⁾ 등에 근거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등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 될 시·도와 재수립 빈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 매입 소요경비 보조 관련(안 제14조)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①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②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현행법 시행령은 매입경비 보조에 대하여 ①도로·하천의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②공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시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규정

1) 현행법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 국유지가 ①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②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자료 별첨] 반환공여구역(발전종합계획 반영 기준) 및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 현황

- 현행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 국비 보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 국비 보조 현황>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기간	국비(억원)
9개	31개		13,985.1
부산진구	캠프 하야리아 공원	'09~'13	2,410.59
	캠프 하야리아 도로	'09~'13	288.98
대구 남구	캠프 워커 도로, 공원	'10~'14	210.49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공원	'09~'30	3,342.00
	캠프 마켓 도로	'09~'30	407.00
경기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로	'09~'12	244.00
	캠프 라과디아 공원	'10~'22	338.00
	캠프 라과디아 국지도로	'10~'22	81.27
	캠프 에세이온 레포츠공원	'10~'21	58.80
	캠프 에세이온 도시계획도로	'12~'13	32.00
	캠프 에세이온 도로 확장	'11	15.40
	캠프 스탠리 공원	미반환	286.00
	캠프 스탠리 국도 확장	미반환	9.00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계획도로	'12~'29	219.00
	캠프 홀링워터 공원	'11~'17	321.16
경기 파주시	캠프 하우스 공원	'13~'21	748.00
경기 동두천시	캠프 님블 근린공원(수변)	'11~'12	19.26
	캠프 님블 수변공원	'22~'23	28.00
	캠프 님블 도로	'11~'13	12.03
	캠프 님블 하천정비	'11~'13	26.30
	캠프 캐슬 근린공원	'22~'26	76.00
	캠프 캐슬 도로	'15~'26	71.00
	캠프 캐슬 시가지우회도로	'15~'29	61.60
	캠프 모빌(H-220) 근린공원	'10~'26	173.00
	캠프 모빌(H-220) 도로	'10~'29	95.00
	캠프 케이시 글로벌21 평화공원	미반환	2,512.00
	캠프 케이시 시가지우회도로	미반환	248.80
	캠프 호비 시가지우회도로	미반환	163.20
경기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13~'18	424.00
강원 춘천시	캠프 페이지 공원	09~'23	531.00
강원 원주시	캠프 룡 공원	'13~'24	532.22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국유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재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국비 보조 시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참고자료 1] 반환공여구역 현황(발전종합계획 반영 기준)

구 분	지방자치단체	반환기지	반환시기	규모(만㎡)
합 계	10개	26개		4,207
반환완료 (21개)	부산진구	캠프 하야리야	'10.1.	54
	의정부시	캠프 시어즈	'07.5.	13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07.4.	14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온	'07.5.	31
	의정부시	캠프 홀링위터	'07.5.	24
	의정부시	캠프 카일	'07.5.	15
	의정부시	캠프 잭슨	'20.12.	17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22.2.	83
	동두천시	짐볼스 훈련장	'05.9.	1,195
	동두천시	캠프 님블	'07.4.	6
	파주시	캠프 하우스	'07.4.	64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	'07.4.	17
	파주시	캠프 스탠턴	'07.4.	27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07.5.	25
	파주시	캠프 게리오웬	'07.5.	29
	하남시	캠프 콜번	'07.4.	31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07.5.	2,380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19.12.	74
	춘천시	캠프 페이지	'07.5.	67
	원주시	캠프 룡	'19.12.	34
	대구 남구	캠프 워커	'20.12.	7
미반환 (5개)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미정	비공개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정	비공개
	동두천시	캠프 호비	미정	비공개
	동두천시	캠프 모빌(일부)	미정	비공개
	동두천시	캠프 캐슬(일부)	미정	비공개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군(7개)·구(3개)	읍(20개)·면(62개)·동(96동)
부산광역시(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인천광역시(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북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4면·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2면·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9면·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릉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포천시(1읍·9면·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중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4면·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동두천시(7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강원 특별자치도 (27개)	춘천시(4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원주시(3면·5동)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시(1동)	문곡소도동
	횡성군(1읍·7면)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군(1읍·2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홍천군(2면)	동면, 서석면
	철원군(1읍)	갈말읍
경상북도 (17개)	포항시(1읍·14동)	홍해읍, 죽도1동, 죽도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동, 상대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봉화군(2면)	춘양면, 소천면
경상남도 (6개)	사천시(1읍·3면)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진주시(2면)	정촌면, 금곡면
제주특별 자치도(3개)	서귀포시(1읍·1면)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1면)	한경면